

# 소 장

원 고 ○○○ (주민등록번호)
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(우편번호)
전화·휴대폰번호:
팩스번호, 전자우편(e-mail)주소:

피 고 ◇◇◇ (주민등록번호)
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(우편번호)
전화·휴대폰번호:
팩스번호, 전자우편(e-mail)주소:

#### 전부금청구의 소

# 청 구 취 지

- 1. 피고는 원고에게 2,000,000원 및 이에 대한 20〇〇. 〇〇. 〇〇.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%의 각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.
- 2.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.
- 3.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.

라는 판결을 구합니다.

# 청 구 원 인

- 1. 원고는 소외 ◆◆◆에 대하여 물품대금 2,000,000원의 채권이 있어 소외 ◆◆◆를 상대로 ○○지방법원에 20○○가소○○호로 물품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○○지방법원의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.
- 2. 원고는 위 물품대금채권의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고 소외

- ◆◆◆을 채무자로 하여 귀원 20○○타채○○○호로 피고가 소외 ◆◆◆\$\\
  지급할 변제기가 이미 지난 물품대금 2,000,000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\*\*

  령의 결정을 얻어 같은 결정정본이 20○○. ○○. □○.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며,
  그 뒤 확정되었으나, 피고는 위 전부금을 지금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.
- 3. 따라서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전부금 2,000,000원 및 이에 대한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인 20〇〇. 〇〇. 〇〇.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15%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받고자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.

### 입 증 방 법

1. 갑 제1호증

채권압류 및 전부명령

1. 갑 제2호증

위 결정 송달증명 및 확정증명

## 첨 부 서 류

1. 위 입증서류

각 1통

1. 소장부본

1통

1. 송달료납부서

1통

2000. 0. 0.

위 원고 ㅇㅇㅇ (서명 또는 날인)

### ○○지방법위 귀중

	T.	1	,
관할법원	※ 아래(1)참조	소멸시효	○○년(☞소멸시효일람표 <b>^^^</b>
제출부수	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		
비용	・인지액 : ○○○원(☞산정방법) ※ 아래(2)참조		
	·송달료 : ○○○원(☞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)		
불복절차	・항소(민사소송법 제390조)		
및 기 간	·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(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)		
	·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피전부채권으로 한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,		
기타	채무자에게 송달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지만, 임차보증금반		
	환채권은 임대인의 채권이 발생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발생하는		
	것이므로, 임대차관계종료 후 그 목적물이 명도되기까지 사이에 발생한		
	임대인의 채권을 공제한 잔액에 관하여서만 전부명령이 유효함(대법원		
	1998. 10. 20. 선고 98다31905 판결).		
	·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피전부채권으로 한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, 임		
	차보증금이 임대인의 채권이 발생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것이라		
	고 하더라도 전부명령에 의한 채무변제의 효과는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		
	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함(대법원 1998. 4. 24. 선고 97다56679 판결).		
	·채권자가 자기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려면 채		
	무자의 무자력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 통상이지만, 임대차보증금반환채		
	권을 양수한 채권자가 그 이행을 청구하기 위하여 임차인의 가옥명도가		
	선이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어서 그 명도를 구하는 경우에는 그 채권의		
			관계가 없는 일이므로 무자력을
			989. 4. 25. 선고 88다카4253, 4260
	판결).		900. 1. 20. E.E. 00 1/2   1200, 1200
		처에 따라 조다:	청이 甲 회사와 조달물자구매계약
			로 정한 사안에서,위 조달계약은
			,
	그 당사자가 조달청과 甲회사이고 수요기관인 지방자치단체는 그 계약 상 수익자에 불과한 '제3자를 위한 계약'이므로 甲 회사에 대해 조달계		
	약의 당사자로서 그 대금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조달청일 뿐이고,조		
	달계약에서 계약금액의 지급방법을 '대지급'으로 약정한 이상,수요기관		
	인 지방자치단체를 제3채무자로 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甲		
	회사의 채권자가 위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전부금을 청구할 수 없음		
	(대법원 2010. 1. 28. 선	. 과 2009닥56160	<b>번</b> 설).

#### ※ (1) 관 할

1. 소(訴)는 피고의 보통재판적(普通裁判籍)이 있는 곳의 법원의 관할에 속하고,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하여지나,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,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하여짐.

- 2.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· 영화 기할 수 있음.
- 3. 따라서 사안에서 원고는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나 의무이행지(특정물의 인도는 채권성립당시에 그 물건이 있던 장소에서 하여야 하지만, 그 밖의 채무 변제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하여야 하므로 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자기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: 민법 제467 조 제1항, 제2항)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.

#### ※ (2) 인 지

소장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 상당의 인지를 붙여야 함. 다만,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지의 첩부에 갈음하여 당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·직불카드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는바, 현행 규정으로는 인지첩부액이 1만원 이상일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또한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수납은행 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인지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음(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27조 제1항 및 제28조의 2 제1항).

●●●분류표시 : 민사소송 >> 소의 제기 >>이행의 소